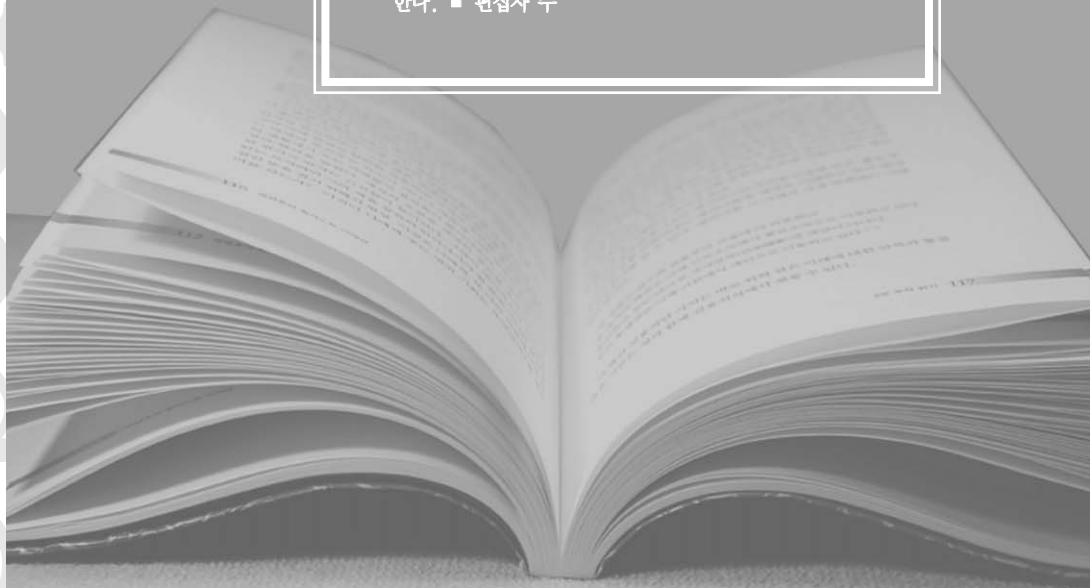


특 집

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2006년 10월 4일 정부는 지난 9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공포하였다. 법률 제8029호로 공포된 이번 법은 6개월 후인 2007년 4월 5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02년부터 개정 추진된 이후로 5년여의 노력 끝에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설치 등 중요한 변화를 담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도서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특집을 마련하였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은 심정으로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고 새로운 도서관 문화 창출의 근거로 삼아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편집자 주



〈특 집〉

도서관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 개정 도서관법,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

2006년 9월 8일 제262회 제2차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29항으로 상정된 이미경 의원등 47인¹⁾이 발의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표결 처리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전병헌 의원이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문화관광위원회 전병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국가대표 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하며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동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하였습니다.

- 1) 47명의 발의의원은 다음과 같다. 이미경.노웅래.이시종.김태홍.이근식.김정권.민병두.우제창. 안민석.조경태.안상수.염동연.강기정.이광철.김영주.한명숙.임종석.박재완.정봉주.이상경.김재홍.구노회.노현승.우상호.지병문.백원우.최재성.정청래.강혜숙.유기홍.김혁규.우원식.신중식.이은영.신기남.정성호.이인영.문학진.윤원호.강길부.조성래.배일도.김재윤.김영춘.이경숙.서해석.황우여
- 2) 이하 전병헌 의원의 심사보고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본회의 회의록에서 옮긴 것이다.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2/pdf/262za0002b.PDF#page=23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대표도서관을 장 제목으로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조항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기능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의 한 종류로 규정하여 장 제목으로 편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도서관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담당하여 종합적 관점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 514개관의 대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 주체가 되기보다는 법정부처 차원의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도서관 발전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도서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도서관정책 관련 부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도서관정책위원회에 둘 경우 실질적으로 도서관정책을 총괄하여야 할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책 기능이 약화될 것이므로 도서관정책기획단을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하고 대신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위원회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정무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중앙도서관은 중앙행정기관인 문화관광부의 소속 하부기관에 해당하여 조직체계상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중앙도서관과 별도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도서관 행정체계의 혼란과 중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두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전체적인 도서관 행정업무를 관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의원의 심사보고 후 별다른 토론이 없이 곧바로 전자투표를 진행했고, 표결 결과 재석 230인 중 찬성 144인, 반대 62인, 기권 24인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이상득 부의장이 선포하였다. 이로써 2005년 6월 1일 이미경 의원등이 법안을 발의

한 이후 술한 논의 끝에 드디어 새로운 도서관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날 국회 본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었고,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9호로 공포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인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³⁾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도서관이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학습공간이 되고 지식정보 활용능력의 제고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 요구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며,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이 법의 성격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독서진흥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12조 및 제13조)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등의 수립(안 제14조 및 제15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안 제22조 및 제25조)

시·도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지역대표도서관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 등(안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자료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공포된 법령은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http://www.moleg.go.kr/01/05/view.html?folder=04&code=1159927785703>
 전자관보 : <http://gwanbo.korea.go.kr/> (2006년 10월 4일)

- 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안 제43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
 도서관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안 제45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 개정 추진 경과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새로운 도서관 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도서관정책의 주요한 기반인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를 반영해서 한국도서관협회는 2002년 1월 협회 기획위원회 내에 도서관정책개발팀을 구성하고 도서관법 개정을 본격 논의하였다. 당시 개발팀에는 김태승 기획위원장을 필두로 당시 기획위원이었던 김지봉, 이경구, 이은철, 광동철, 이용훈이 참여하여 1월 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의견을 최종 조율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안을 만들어 2002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한 후, 이를 반영한 최종 개정의견서를 11월 6일 문화관광부에 공식 제출하였다.

이후 문화관광부는 2002년 8월 발표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2003년 들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통해 법 개정 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그 해 12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연구는 김세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희운(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등 4명의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과 개정안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

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ctpi.re.kr/munhwa_sangse.htm?num=1406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처음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치다가 오늘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존치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앞으로의 도서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오늘날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1963년 처음 제정된 이래 수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큰 변화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법이 실질적인 도서관 진흥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거나, 일부 조항들은 오늘날 도서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들이 도서관계 내·외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 체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수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내용들이 원래의 법 조항에 덧붙여짐으로써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개될 도서관 환경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향후 도서관의 발전이 새롭게 만들어질 도서관 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법률 조항에 담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부분에서는 도서관 및 도서관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보고 나아가 사회상황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도서관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내용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비록 우리나라와는 다르지만, 외국의 도서관 관련법과 기존 관련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외국의 도서관법에서는 주로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준을 통하여 도서관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연구가 최종 결과물로 목표한 바 있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은 현재의 법률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주면서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한 것이며, 두 번째 안은 현행 법률 체계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변화의 내용을 담고자 한 것이고, 세 번째 안은 중장기적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지향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것이다.

3. 개정안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변화 내용

이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에서는 이 법의 지향을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현재 크게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변화할 도서관 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록 도서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계층간, 지역간 지식정보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지원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넷째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기술환경에 도서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마지막 다섯째는, 도서관 서비스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지향을 보다 명확히 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변화사항들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의 명칭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도서관의 관종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크게 네 개로 조정하였다.

셋째, 도서관 정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칭)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도서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으로 '도서관정보서비스진흥기금'의 설립도 제안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지원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칭)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이 업무를 담당할 '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센터'(가칭)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여섯째,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도서관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내용들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 대해서 한국도서관협회는 2003년 제41회 전국도서관대회 중인 9월 26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법 개정안 연구 내용을 주제로 워크숍을 가지고 도서관계 의견을 폭넓게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 차원에서 도서관법 개정시안을 작성, 2004년 5월 6일 제1차 국가도서관정책자문회의에 이 시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자문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을 반영, 수정한 개정시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폭넓게 도서관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2004년 6월에는 한국도서관협회 기관지인 <도서관문화>와 협회 홈페이지에 개정시안을 공개하고 7월 24일까지 도서관계와 학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하였다. 또한 <도서관문화>는 2004년 8월호에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다”라는 특집을 마련하여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이미경 위원장이 한 인터뷰⁵⁾에서 도서관과 도서관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도서관법 개정 작업

5) 중앙일보 2004년 7월 19일 [미디어 이사람!] 국회 문광위원장 이미경 의원

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미경 의원실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이미 작성한 개정시안을 검토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다. 검토과정에서 2004년 5월의 문화관광부 개정시안에 대해 몇 차례 수정이 있었다. 특히 도서관정보서비스진흥기금 설치 조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련 조문은 삭제하기로 하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보다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명문화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장도 정무직으로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 강화를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미경 의원실은 이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5년 4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도서관협회 한상완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법 개정방안을 연구한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하였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는 김재운 국회의원, 안찬수 책임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박영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장, 강재룡 정독도서관장,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장, 윤희운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각각 참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각 종 도서관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조항(▲ 국가대표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국립장애인도서관서비스센터의 설립 등), 법 명칭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바뀌는 것에 따른 ‘독서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도서관 육성과 독서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⁶⁾ 공청회에서 제기된 제안이나 지적에 대해서 4월 22일과 5월 17일 각각 관계자들의 회합을 통해 개정안을 수정하였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2005년 6월 1일, 이미경 의원등 47인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1900)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다.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었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의 법은 내용상으로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법체계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차례의 개정과정에서 여러 내용들이 덧붙여지면서 내용과 형식에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옴.

6) 공청회 자료집은 이미경 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leemikyung.net/bbs/download.php?bbsMode=fileDown&code=assem_brief&id=178&filename=도서관법토론회자료.hwp

'02. 8월 확정 발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통한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서 도서관 육성을 위해 현행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며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거 동 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법 명칭에 있어 도서관의 기본활동 가운데 하나인 독서진흥을 법명에 포함시킨 것은 법체계상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서관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 '도서관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률명칭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함.
- 나. 법의 목적에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격차 해소 등 국가 및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함(안 제1조).
- 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신설함(안 제2조).
- 라. 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관련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동 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 마. 도서관발전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수립·추진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바. 도서관의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사. 제3장의 명칭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변경함(안 제3장).
- 아. 해당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역대표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 서비스행정의 지방분권을 지원하기 위한 장을 신설함(안 제4장).
- 자. 광역지방자치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24조).
- 차. 학교도서관의 업무에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등을 추가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은 학교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유도함(안 제7장).
- 카. 현행법의 특수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킴에 따라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서 '전문도서관'으로 변경함(안 제8장).
- 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규정을 신설함(안 제9장).
- 파.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립함(안 제45조).

이처럼 이미경 의원이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에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도 별도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5년 2월 24일 정병국 의원과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각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별도의 법령 제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정병국 의원은 이미 2004년 10월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 제안』이란 정책자료집을 발표하였는데 “한국이 정보통신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독서 환경은 아날로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재운 의원이 주재발제를 했고, 한국점자도서관 육근해 관장, 책임있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안찬수 사무처장, 국립중앙도서관 권재운 자료관리부장, 나사렛대 김종인 교수, 마산시각장애인도서관 장상호 관장, 대구대 전재봉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⁷⁾

정병국 의원은 공청회 이후 2005년 4월 26일 21명의 의원⁸⁾과 함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1714)을 제출하였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⁸⁾

■ 제안이유

1994년에 발표한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에서 도서관서비스는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용가능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의 특정 집단에 국한 되거나 다른 집단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검색하거나 찾아보는 등 지식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각종 시설이나 제도 등의 미비로 인하여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각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국립도서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7) 공청회 자료집은 정병국 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byounggug.co.kr/Park/0224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건립을위한공청회발제및토론내용.hwp>

8) 발의에 참여한 21명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김명주, 김성곤, 김영숙, 김재경, 김재원, 박성범, 백원우, 서혜석, 안명욱, 안상수, 엄호성, 오제세, 유승민, 이병석, 이시중, 이인기, 이해훈, 정병국, 정화원, 최인기, 황우여

■ 주요내용

- 가.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설치하고, 광역시·도에 대표 시각장애인도서관을 두며, 그 업무 분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에 분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나.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의 수립 및 총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함(안 제18조의3 신설).
-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표시각장애인도서관 및 분관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특수한 자료 등을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함(안 제18조의4 신설).
- 라.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으로 하여금 대표시각장애인도서관 및 각 분관과 협력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2005년 6월 제출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의 이미경 의원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4년 이후 법률의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점, ‘독서진흥’이 도서관의 기본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임에도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이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법률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법률제명을, 법체계와 내용에 맞게 「도서관법」으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점, 그리고 2002년 8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서관의 역할모색을 통해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도서관에 관한 제도적 틀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개정안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 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바, 첫째, 개정안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제명의 “독서진흥”부분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 정책적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둘째, 개정안이 도서관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발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중(館種)별 특성있는 규율을 위해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도서관 진흥법안」등 관중별 분법화에 대한 정책방향과 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셋째, 개정안 제45조가 규정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설치의 경우,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정병국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입법취지를 같이하는 점이 있으므로,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넷째, 현재 국회도서관의 경우 입법조사업무(해의자료업무 포함)에 특수성을 갖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사서 교육과 타 도서관에 대한 지도·협력 기

능을 가지는 특성이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본질적 기능 및 업무내용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보다 집중화된 기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 도서관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고 지적하였다.

이후 국회에서는 물론 행정부와 도서관계에서도 이미경 의원안 중 국가대표도서관 문제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문제,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인가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5년 6월 2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있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독서진흥 분법 필요,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설치문제 검토(김재운 위원), 국가대표도서관 개념의 적절성 등 문제(이재오 위원, 심재철 위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특수성 내지 역할 검토(손봉숙 위원, 이재용 위원, 이계진 위원) 등이 다루어졌다. 논의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결정하였다.⁹⁾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2005년 9월 1일 문화관광위원회의 박형준 의원등 27명¹⁰⁾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2548)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의 각 분야마다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지식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은 선진국의 지식기반사회가 주도하는 세계적 추세에의 적응이며 국가 경쟁력의 제고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국가 경쟁력강화 측면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실정임.

또한 단순한 자료의 보관 및 제공이라는 기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학습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지식정보사회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라는 역할과 정보격차 해소의 장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시설 및 자료의 기준 등과 관중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한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관중별 특성에 따른 발전과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율하거나 독서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은 별도로 제정하고자 함.

9) 회의록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54/pdf/254rc0003b.PDF#page=14

10)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고조흥, 권오을, 권철현, 김기현, 김병호, 김석준, 김양수, 김재경, 김정훈, 김충환, 김희정, 박계동, 박승환, 박형준, 안홍준, 엄호성, 원희룡, 이계경, 이계진, 이상배, 이성권, 이재오, 이주호, 정병국, 정의화, 정희수, 허천

■ 주요내용

- 가. 법률 명칭을 ‘도서관법’으로 변경함.
- 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신설함(안 제2조).
- 다. 장애인, 어린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 라. 도서관의 기능 확대와 관련 실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 동 법의 적용을 받아 지원·육성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마. 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공공도서관이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이관하기 위하여 지역보존전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8조)
- 사.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

이처럼 박형준 의원등의 개정안이 제출됨으로써 국회에서는 3건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¹¹⁾ 한편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박형준 의원안에 대해 한국도서관협회의 의견을 문의해 온 바, “우리 (한국도서관협회는 2005년 6월 1일(수) 제출된 이미경 의원 등 47명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도서관계의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 법률개정안이 그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입장을 10월 14일(금)자로 동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들 3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9월 13일(화) 10시 30분 국회 본관 626호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희운 대구대 교수, 고영만 성균관대 교수, 육근해 한국점자도서관 관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등 4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으며, 의원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에는 문화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관계자들이 방청인으로 참석하였다. 진술인들은 그간 쟁점이 되어 왔던 국가대표도서관 문제,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충을 위한 방안, 독서진흥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 다양한

11) 이 3건의 개정안 이외에도 2005년 3월 2일 이규택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47호)이 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서관에서 휴대전화기 등 이동통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의 학습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안 제51조의2 신설)으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도서관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어 이번 글에서는 함께 다루지 않았다.

의견을 제출하였다.¹²⁾

공청회 이후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도서관계 등의 폭넓은 의견 교환과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심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6년 2월 법 개정에서 있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었다. 2006년 2월 27일 우리나라 도서관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께 직접 도서관 관련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보고자리에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신기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장, 김태근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이 참석하였다. 공공도서관에 관한 정책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도서관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미경 의원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위원회 일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소관 위원회로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고,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사무처와 같은 정책지원조직을 탄탄하게 구성 할 것(검토이행사항 : 문화부, 행자부)”을 지시하였다.¹³⁾ 이같은 지시 이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관한 개정안 관련 조항의 수정이 적극 추진되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6년 4월 드디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3개의 도서관법 개정안과 독서문화진흥법¹⁴⁾이 함께 논의되었는데,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법」으로 변경하고, ‘국가대표도서관’과 ‘광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하며, 도서관 발전의 종합계획을 수립·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는

12) 이날의 공청회 기록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56/pdf/256rc0002b.PDF#page=1

13) 이날의 보고회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3월 22일(수) 관보 제16217호에 게재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http://gwanbo.korea.go.kr/www/gwanbodata/2006/03/0322000000.pdf>] 이날의 지시사항은 모두 3가지였는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추진 이외에 ‘지방교부세 배정 기준의 재조정 방안 검토’, ‘도서관 관련 예산확충과 기능 및 역할의 개선’에 관한 지시가 있었다.

14) 박형준 의원등 14인이 2005년 10월 26일 발의한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다. 2005년 11월 25일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변우열 공주대 교수, 안찬수 책임은사회 만들기국민운동 사무처장, 황금숙 대림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공청회 자료집은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culture.na.go.kr/servlet/Download?rname=1100358517B1.HWP&fname=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책자.hwp](http://culture.na.go.kr/servlet/Download?rname=1100358517B1.HWP&fname=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책자.hwp)] 당시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박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안’을 수정없이 가결하였다. 도서관법 개정은 현재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과 독서진흥 관련 법률로 구분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독서진흥 관련 법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도서관법에 대한 내용만을 주로 다루고 있어 독서문화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 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¹⁵⁾

첫째, 국가대표도서관을 장(章) 제목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조항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기능을 도서관 종류의 범주에 포함하여 장 제목으로 편입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대표도서관”의 명칭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하여 정리하였음.

둘째,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체에 대해서는 현재 도서관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514개관)의 대부분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도서관 정책을 주관하는 것에 대한 일부 소위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활용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도서관발전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셋째, 제정안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서관의 정책 기능 강화와 도서관정책 관련부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였음.

넷째, 지역보존도서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보존도서관의 기능이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대표도서관에 지역보존도서관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다섯째,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또는 장애인도서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도서관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며,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도서관 건립으로는 전국의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가 어렵다고 보아,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 각종 장애인에 대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음.

한편, 정병국 의원 및 박형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개정안은 병합심사를 통해 일부 조항은 반영하였으나,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방안 등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계속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¹⁶⁾

이같은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4월 25일 열린 제259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15) 주요 수정사항은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미경 의원안에 대한 정보 중 ‘심사보고서’에 수록된 법안심사소위원회 김재홍 심사위원장의 보고내용을 옮긴 것임.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20/17/hwp/171900_200.HWP

16)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59/pdf/259rcb003b.PDF#page=4

회 제4차회의에서 논의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는 후에 축조심사 및 의결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윤 의원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과 실무회의를 두도록 한 것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다. 위 원수는 민간의 참여를 고려해서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실무회의는 위원회의 활 동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획단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다른 의원들의 찬성 으로 수정되었다. 나머지 조항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¹⁷⁾ 이날 문화관 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또 한 번의 논의과정 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논의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정무직 조항이라든가 도서관정 보정책위원회의 기획단 설치 문제 등에 있어 또 다시 국회나 정부, 관계 부문 등에서 의 찬반 논란이 있었다. 결국 이같은 논의 결과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 회의에 반영되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수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 개정법률안’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은 또 다시 일부 조항이 수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2006년 8월 24일 열린 제2소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위원회가 공 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정무직 조항 삭제 요청을 한 것을 수용하고,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의 기획단은 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한 사무기구와 위원회 사무 수행을 위 한 문화관광부 내의 기획단을 두는 것으로 조정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으로 변경하는 지구수정을 거쳐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가결 처리하였다.¹⁸⁾ 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법률 안은 8월 28일 열린 제261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되어 이상경 소위원장의 심사보고¹⁹⁾에 이어 질문(없었음) 후,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17) 그러나 같이 상정된 ‘독서문화진흥법안’ (박형준 의원 대표발의)은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결국 표결을 한 결과 재석 14인 중 찬성 5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소위원회 의 의결은 부결되었다. 자세한 회의내용은 회의록 참조.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59/pdf/259rc0004b.PDF#page=32

18) 소위원회 회의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는 절차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며, 결국 절차에 반대한다는 박세환 의원의 의견을 부대의 견으로 첨부하여 가결처리하였다. 또한 독서문화진흥법안이 같이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박양우 차관이 이번 국회 기간 동안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처 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1/pdf/261ba2001b.PDF#page=47

19) 심사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도서관법과 독서진 흥법으로 분법하면서 도서관법만 입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규정은 문화관광위원회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삭 제하기로 하고 대통령 소속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하되 대신

들어가, 이익있는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²⁰⁾ 이로써 2005년 6월 1일 발의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의 최종수정안이 마련되었다. 수정안의 수정제안이유와 수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

圖書館및讀書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8. .
제안자 : 문화관광위원장

수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가대표도서관”을 도서관의 종류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서관 정책기능강화를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대통령소속으로 변경하고, 지역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에 포함하도록 하며, 문고를 공공도서관에 포함하도록 하여 문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각종 장애인에 대한 콘텐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두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독서진흥과 관련하여서는 별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가. 국가대표도서관 등을 관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국가대표도서관’ 과 ‘광역대표도서관’ 에 관한 정의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며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후 수정의견을 제출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에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차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분법하면서 도서관법만 입법하는 것은 입법 과정상 문제가 있으나 현재 독서진흥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이어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화관광부의 해명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 자세한 회의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 참조.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1/pdf/261ba0004b.PDF#page=8

21) 이 내용은 이미경 의원안의 홈페이지 내용 중 ‘심사보고서’에 수록된 것을 옮긴 것이다. 이 심사보고서에는 법안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대체토론의 요지, 소위원회 심사내용, 찬반토론의 요지, 수정안의 요지(2006.4.), 심사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2005. 9. 13 공청회 의견 요약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20/17/hwp/171900_200.HWP

- 나. 도서관의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국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심의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상향함(안 제12조).
- 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주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
- 라. 제3장의 명칭을 '국가대표도서관'에서 현행법과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함(안 제3장).
- 마. '광역대표도서관'의 명칭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변경하여 공공도서관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장).
- 바.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에 지역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23조제4호).
- 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45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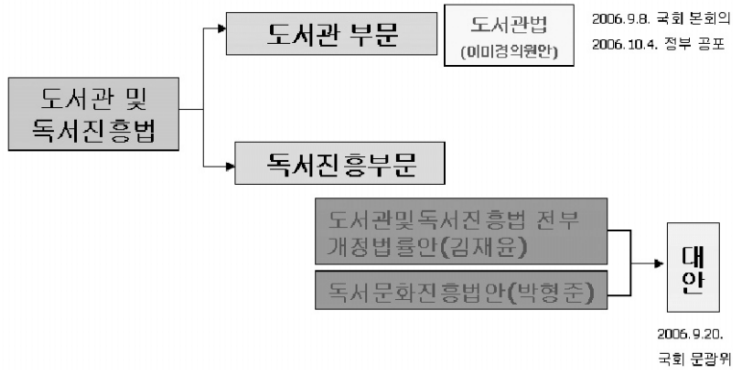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안은 그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6년 9월 8일 표결로 가결되었으며, 이후 정부에 이송된 후 10월 4일 법률 제8029호로 공포되었다.

■ 주요 변경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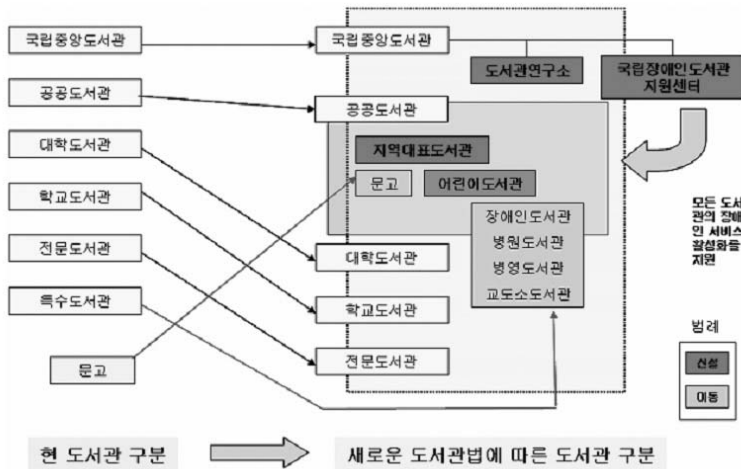
이번에 공포된 새로운 「도서관법」은 지금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법」과 몇 가지 내용에서 차별적이다.

우선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분법을 한 것이다. 현재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법」은 1994년 「도서관진흥법」을 폐지하고 대신 “도서관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일반에게 독서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 들어와 도서관 발전 뿐 아니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라도 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5년 법 과정에서 이의 분리가 추진되었고, 결국 새로운 도서관법 개정으로 2007년 4월부터는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²²⁾이라는 2개의 법률로 나뉘어 각 부문의 발전을 이끌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22) 도서관법과 분리된 독서진흥 관련 법률은 ‘독서문화진흥법안’(박형준의원등 19인, 2006.5.8. 의안번호 174364)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등 25인, 2006.8.1. 의안번호 174669)이 각각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9월 14일 제262회(정기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논의한 끝에 2개의 의안은 문화관광위원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 9월 20일 열린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다. 이 법률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어 2006년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도서관의 종류를 새롭게 정리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도서관의 종류는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 6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도서관법에서는 이같이 명시적으로 종류를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각 제3장부터 제7장까지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으로 장 제목을 기술하고 있다. 기존의 특수도서관에 속해 있던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포함시켰다. 또한 문고와 새롭게 정의한 어린이도서관도 역시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시키는 큰 변화를 담고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 하에서의 지역의 자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도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같은 변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 적용범위를 신설하였다. 새로운 법 제3조(적용 범위)는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이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정책과 행정의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위해 이번에 신설한 것이다. 이는 이미 2003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안 연구』에서도 제시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 법에 포함됨으로써 앞으로는 도서관법과 정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를 규정하였다. 개정 법의 제2장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장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개정 법 제12조와 제13조)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개정 법 제14조와 제15조)에 관한 내용이 이번 개정 법안의 중요한 핵심이다. 특히 도서관 정책에 있어 정책개발·조정·분석 기능을 담당할 도서관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동안의 정책자문기구로는 1989년 도서관발전위원회(문교부)를 시작으로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문화부, 2000년 폐지), 2002년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문화관광부) 등으로 이어져 왔으나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도서관계는 보다 강력한 정책기구로서의 위원회를 희망해 왔는데,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당초 이미경 의원안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위상을 설정하였으나, 2006년 2월 27일 공공도서관 정책에 대한 대통령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소속 기구로 추진해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를 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이같은 성과를 얻은 것이다. 이 위원회는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서관 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과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기획단을 두

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이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종합계획에는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합계획이 세워지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이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체계를 통해서 그동안 정책 소관 부처가 여럿으로 나뉘어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오지 못했다는 도서관계의 문제 제기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에서의 이 두 가지 사항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지역의 도서관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새로 규정하였다.

개정 법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역대표도서관은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으로 광역자치단위에서 지역 내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가는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의 설립·운영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 도서관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대표도서관과 함께 시·도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

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장은 시·도 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같은 조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자발적으로 도서관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정비했다.

여섯째,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를 도서관의 책무로 명시했다. 개정 도서관법은 도서관으로써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이 센터는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자 도서관정책의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정비하고,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 도서관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각 지역대표도서관과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을 모두 포괄하는 도서관정책을 실천해 가는 핵심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국가와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1. 이용자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 이후의 과제

10월 4일 정부가 개정 도서관법을 공포함으로써 이제 6개월이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는 새로운 도서관법이 시행되게 된다. 개정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시안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문화관광부를 비롯해서 이번 개정 법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 필요시 공청회 등을 통한 도서관계와 관련 부문들의 폭넓은 의견 청취, 입법예고, 그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하게 된다. 이같은 작업은 모두 6개월 내에 효과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은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관련 전문가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참여하는 작업팀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작업에는 도서관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도서관협회는 산하 관종별 협의회와 여러 전문위원회는 물론, 문헌정보학 관련 학회와 학과, 사서교육원 등에 의견을 구하여 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계는 특히 도서관의 시설, 자료 및 직원기준, 그리고 사서자격제도 등에 대해서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 작업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기획단이 설치된 문화관광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별도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직제 및 정원 확보,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도서관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도서관계는 문화관광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각 시·도에 설치될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실효성있게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계는 내적인 소통과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지역의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체적인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조직하는 구체적 작업을 추진하는 동안 도서관계는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할 때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서관 주요 문제들을 사전에 충실하게 분석·연구해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㉞